

## 미국의 공장 설립 허가 절차 및 지원 제도 조사

-이항구 연구위원(주력산업실)

### 1. 출장 개요

- 출장지: 미국 알라바마, 조지아, 캘리포니아
- 출장기간: 2008년4월8일 ~ 2008년4월15일 (6박8일)
- 출장자: 이항구(연구위원, 주력산업실)

### 2. 출장 목적

- 미국의 공장 설립 허가 절차 및 지원 제도 조사

### 3. 출장 주요내용

## 한미간 공장설립 제도 비교

### I. 한미 규제 수준의 종합 비교

- 지속적인 규제완화로 창업 활성화 및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

- 미국은 세계은행이 평가한 2008년 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 순위에서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다음의 세계 3위를 차지한 반면 우리나라는 30위를 기록

< 표 I -1 > 규제 완화 국가 순위

순위	국가	순위	국가
1	싱가포르	13	핀란드
2	뉴질랜드	14	스웨덴
3	<b>미국</b>	15	태국
4	홍콩	16	스위스
5	덴마크	19	벨기에
6	영국	20	독일
7	캐나다	21	네덜란드
8	아일랜드	24	말레이시아
9	호주	29	이스라엘
12	일본	<b>30</b>	<b>한국</b>

자료 : World Bank, Doing Business 2008

- 경제규모와 입지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미국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 가능

**노사 안정과 저렴한 사업비용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 유지**

- 미국의 노조 가입률은 2007년 12.1%를 기록하였으며, 노사합의에 따른 비용 절감 등으로 미국은 OECD 10개국을 대상으로 한 사업 비용이 저렴한 상위 국가 순위에서 3위를 차지
- 이러한 규제완화와 저비용으로 미국은 2006년 세계 최대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국의 지위를 차지하였으며, 2007~2011년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대상국 전망에서도 1위에 등재

< 표 I -2 > 사업비용의 국제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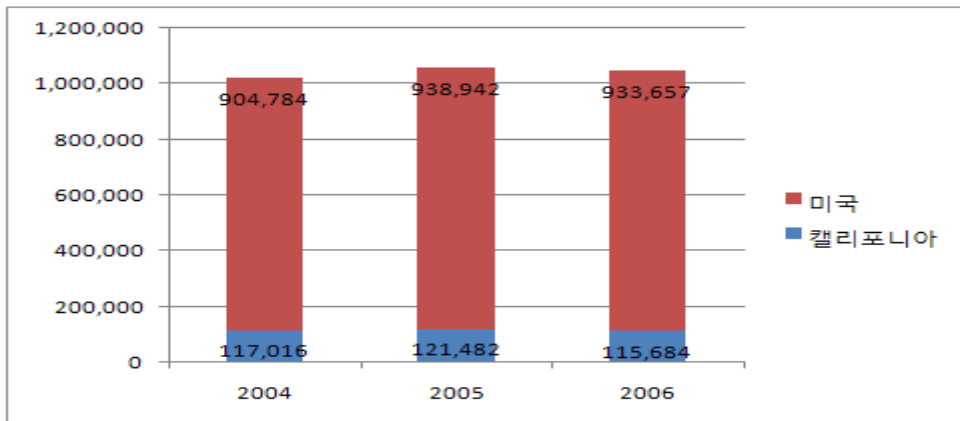
국 가	2008년 비용 지수	국 가	2008년 비용 지수
멕시코	79.5	영 국	107.1
캐나다	99.4	네덜란드	107.3
미 국	100.0	이탈리아	107.9
호 주	100.2	일 본	114.3
프랑스	103.6	독 일	116.8

주 : 미국 = 100

자료 : KPMG, Competitive Alternative 2008

- 미국은 WEF의 2007-2008년 글로벌경쟁력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나 우리나라는 11위를 기록
- 미국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창업 활성화와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 때문
- 미국의 창업 건수는 2004~2006년중 연평균 92만 5,794건에 달함

< 그림 I -1 > 미국의 창업 추이(건)



자료 : 미 상무부,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2008

- 창업 활동이 활발한 캘리포니아 주는 2005년 제조업 부가가치액이 2,175억 달러로 미국 주 중 1위를 차지

-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내 전체 창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창업 활동이 미국 전역으로 확대된 결과 2000년 29.1%에서 2006년에는 12.4%로 감소

#### □ 지속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

- 미국 내 제조업체수는 2003년의 34만 1,849개에서 2004년에는 33만 9,083만개로 감소하였으나 외국인의 미국 내 제조업 직접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<sup>1)</sup>
- 외국인 제조업 직접투자 누적액은 2003년의 4,654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5,938억 달러로 증가

#### □ 규제완화 부진과 비용상승은 창업과 공장설립을 억제

- 우리나라는 창업규제가 공장설립을 포함한 자산등록 규제보다 더 강한 편
- 세계은행의 "Doing Business 2008"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은 비교대상 178개국 중 30위를 차지
  - 창업 규제는 110위, 자산등록 규제는 68위, 인·허가 규제는 22위를 기록
  - 규제개혁이 부진하여 2006~2007년 중 국가 순위가 창업은 101위에서 110위로, 자산등록은 65위에서 68위로, 인·허가는 16위에서 22위로 하락
  - 이러한 규제개혁의 부진은 창업과 공장설립의 억제 요인으로 작용

1) 미 상무부, Statistical Abstract 2008; Survey of Current Business 2007. 9

- 복잡한 행정절차와 각종 고비용이 창업을 억제하고 있으며, 규제 내용보다 운용상의 문제가 공장설립 비용의 상승과 기간의 지연을 초래
  - 우리나라의 공장설립 소요 기간은 미국과 큰 격차가 없으나, 미국은 규정상의 기간보다 짧은 시간 내에 인·허가 절차가 종료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연되는 경우가 다반사
  - \* 우리나라는 세계은행이 평가한 창고 설립 인·허가 기간이 세계 최단 수준
  - 결국 공장설립 규제의 문제는 제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용상, 즉 인·허가 담당 인력의 문제로 평가 가능
- 본 보고서는 세계 최고의 창업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실리콘밸리와 한국기업을 비롯한 외국기업의 공장설립과 미국기업 공장의 이전이 증가하고 있는 알라바마 주와 조지아 주를 실시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
  - 근래 미국내 창업이 전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캘리포니아주가 미국내 창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
  - 무노조 저임금 및 유연한 규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남동부 주에서의 공장 설립이 증가

## II. 한미간 공장 설립 제도 비교

### □ 제도 운용 효율성의 격차

- 미국 내 공장설립 관련 규제와 활동은 지역별로 격차

- 미시간 주와 캘리포니아 주 등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주들은 강한 노조 활동으로 인한 비용 상승과 엄격한 환경 규제 등으로 사업비용이 증가하여 공장 설립이 상대적으로 부진
- 알라바마 주와 조지아 주 등 농업 중심의 동남부 주들은 무노조 친 기업 환경과 저임금 및 유연한 규제 제도로 인해 외국기업을 포함한 공장 설립이 활발

#### □ 규제의 내용보다는 운용 효율성의 격차가 큰 편

- 한미간 공장건설 관련 제도상의 격차는 크지 않으나, 우리나라는 제도 운용의 비효율성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평가
  - 인·허가 소요 기간은 규정상 우리나라가 137일, 알라바마 주는 105~140일, 조지아 주는 180~270일이나, 실제 소요기간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짧은 편
-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미국 알라바마주의 공장설립 절차와 비용을 비교해 보면, 인허가 기간상 격차는 크지 않으나, 우리나라의 비용 부담이 매우 큰 실정
  - 우리나라의 경우 농지나 산지 등을 공장용지로 전용하여 조성하는 경우 개발이익부담금의 납부도 큰 부담으로 작용

#### < 표Ⅱ-1 > 한미 공장 설립 절차 및 비용 비교

	한국			미국		
	절차	기간(일)	비용(만원)	절차	기간(일)	비용
공장설립 신청 및 승인	사전재해영향성 검토	30	2,500	대기/수질 환경 평가	90~120	\$1만~2.5 만
	도시계획위원회 심의	40	700			
	공장설립승인	20	900	공장설립승인	15~20	\$250
공장건축	건축허가 및 착공 신고	7				
	건축사용허가 및 준공 승인	7	200	제반 건축허가	동시진행	\$3,000
	설비설치 승인	30				
사용승인	사용승인	3				
기타	대체농지조성		1,700			
합계		137	6,000		105~140	\$13,250~ 28,250

- 주 : 1) 농지 1만m<sup>2</sup> 전용시  
 2) 기타 비용은 대체농지 조성비(1,700만원)  
 3) 미국은 알라바마주 기준  
 4) 개발이익부담금 제외

○ 공장 설립 절차의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, 우리나라는 세계은행이 평가한 참고 설립 인·허가 기간이 규정상 34일\*로 세계 최단 수준이나, 실제 운용면에서는 동 기간을 초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

\* 허가서류 제출, 인가, 감리 및 전기·통신·상하수도 연결까지의 기간

- 환경영향 평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이 짧으나, 관련 서류의 처리 지연이 빈번히 발생

\* 담당 업무가 부서별,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인·허가 업무가 지연되고, 건축주나 대행업체가 주무 부서 뿐 아니라 기자실까지 방문하여 비효율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

- 인·허가 대행 비용 등의 증가에 따라 기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자산등록 규제 완화 순위는 오히려 하락

## □ 인·허가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동시 진행

- 미국은 공장건설을 조기에 완료하여 고용창출이 가능하도록 공장설립에 필요한 제반 인·허가 업무를 민간 전문 업체에게 위탁
  - 민관으로 구성된 프로젝트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지 선정부터 인·허가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지원
  - 공장 준공 후에도 담당자들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 사안을 해결해 주거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
- 미국은 공장건설을 조기에 완료하여 고용창출이 가능하도록 공장설립에 필요한 제반 인·허가 업무를 동시에 진행
  - 일반적으로 동남부 주의 인·허가 절차 및 기간은
    - 1단계 : 부지 정지 작업 허가 : 20일
    - 2단계 : 건물 허가 : 60일 - 환경영향 평가와 동시 진행
    - 3단계 : 환경영향 평가 : 90~120일
- 가장 긴 환경평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프로젝트별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평가를 수행

< 표Ⅱ-2 > 알라바마 주 건축 허가 절차



	항목	소요기간	관계기관	비용	기타
알라바마	건축허가	15~20 일	주정부	\$250	인가후 - 부지조성 이격거리 : 없음
	건축허가	90~120일 (30일간의 공시기간 포함)	주정부	\$3,000	건물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동시진행
	환대 경기		주정부 ADEM	\$10,000 ~	대기와 폐수 인가는 각각 다른 기관에서 승인
	수질 평가		Public owned treatment works (POTW)	\$25,000	폐수 승인은 45~60 일 정도 소요되나 대기 인가는 기간 중 동시진행

< 표II-3 > 조지아 주 건축 허가 절차

	항목	소요기간	관계기관	비용	기타	
조지아	건축허가	30일	조지아 주, 지역정부		이격거리 : 없음 외관 : 규제 없음	
	환경 평가	1. 컨퍼런스	30~90일	조지아 주 상무부 환경보호국		컨퍼런스에서 조지아 주 환경규제 설명
		2. 보고 및 승인 신청		EPD(주정부)		대기, 수질, 토양 환경 평가 대행
		3. 평가	60~90일	EPD(주정부)		기술평가
		4. Review	30일	EPA(주정부)		인가
5. 공청회	30일	EPD(주정부)		공시 후 최종 승인		

○ 조사 대상 주 및 국내 기업

- 알라바마 주 : 현대자동차, 모비스, (주)SL의 3개 공장

- 조지아 주 : 기아자동차, (주)세원의 2개 공장

○ 알라바마 주와 조지아 주는 공장 인·허가 비용의 대부분을 지방 정부가 부담하고 있으며, 기간 단축에 최대한 노력

- 공장설립 절차중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는 환경평가의 경우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평가를 통해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

- 조지아 주 K자동차공장의 경우 9개월이 소요되는 환경평가 기간을 주정부의 지원 아래 4개월로 단축

\* 주지사가 직접 관련 부처에 협조를 구함으로써 조기 완료

< 표II-4 > (주)SL 알라바마 주 공장 설립 및 운영 절차

절 차	관련기관	관련법규	기간	비용	비고
법인설립	주정부	Alabama Business Corporate Act	2주	\$40 (서류제출)	등록절차임
공장부지	Probate Court of Tallapoosa County	The Code of Alabama	즉시	\$162 (면제/대행)	주에서 County, City로 등록 이관
공장입지 승인신청	(지역정부) 카운티 및 시	시 조례	2주		
건축허가 신청	주정부	건축인가(고도인가 등)	즉시	면제 (인센티브)	
환경허가 신청	Alabama Department of Environmental Management		6~9주	\$3,000	대기/수질
기타(세무) FEIN등록	Internal Revenue Service	Internal Revenue Code	즉시	-	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
주 판매 & UseTax등록	Alabama Department of Revenue	The Code of Alabama 1975	즉시	-	
Business License등록	County&State License-County Courthouse		즉시 즉시	- -	

- (주)SL 알라바마 공장의 경우 설립 허가 실 소요기간은 70일 미만, 비용은 대부분 면제로 3,202달러만 지불
- 현대모비스 알라바마 공장의 건축 허가 절차를 건축 시작 전과 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

< 표Ⅱ-5 > 현대모비스 공장 건축 허가 절차 요약

< 건축시작 前 >

승인의 종류	내용	관계기관	소요기간
주정부 환경 승인	Drawing계약서만 가지고 포맷에 맞게 제출, 승인을 득한 후 모든 건축 업무를 시작함 - Air, Storm Water(환경평가)	ADEM (Alabama Department Environmental Management)	서류제출후 약 2주
Stamped architectural engineering drawing	전체도면을 제출하고 설계사가 출석해 설명하고 승인 받음(정부관계자에게 설명:1 day) - State의 도장을 받으면, City에서 거부하는 경우 없음	1. State government 2. City government	도면제출후 2~3주 도면제출후 2~3주
건축 인가 승인	건축 시공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받은 후, 시공 시작 가능	City Government	신청서 제출후 3 일

< 건축 완공 後 >

승인의 종류	내용	관계기관	소요기간
사용 증명	1. 방화 승인            소방 2. 위생 승인            상/하수/오수/대기 3. 전기 승인            전기 4. 건축 승인            건물 5. 설비 승인            시설/장비	시정부	항목별 1 일
	# 각 항목별 시공업체에서 시정부 각 담당자에게 승인 서류 제출하여 Stamp를 받은 후 전 서류 종합해서 City CO담당자에게 제출승인을 받음 - Stamp가 전부 있을 경우 다음날 CO 승인을 내줌. CO가 있어야 건물 사용 가능함		
	# 승인서류 제출 시 공인 검사기관의 시험결과를 첨부하며 시 정부 실사는 1일 소요되고 실 작업자가 시정부 담당자를 상대하여 문제발견 및 보완지시를 효율적으로 행함 보완은 사진으로 지적사항의 개선을 보고하여 통과되는 경우가 많음		1 일

- 알라바마 주의 환경평가는 최장 1년이 소요되나 현대자동차의 경우 주정부의 지원에 의해 준비단계부터 최종승인까지 9개월 만에 완료

< 표Ⅱ-6 > 현대자동차 환경 평가 절차

항목	주무관청	추진책임 구분			소요기간
		건설링		현대차	
		제조업체	지역정부		
<b>1. 대기 인가</b>	주정부				120-360
1-1. 인가서류 제출		○	○	( ○ )	(60)
1-2. 인가신청 발표		○	○		(30)
1-3. 관련 비용 납부	-			○	
1-4. 주정부 검토	주정부		○		(90)
1-5. 대기 인가 승인	연방정부	○			(60)
1-6. 공청회			○		
1-7. 가동 인가			○		
<b>2. 토양오염 인가</b>	카운티	○	○	( ○ )	15-20
<b>3. 폭풍우 인가</b>	카운티	○	○	( ○ )	15-20
<b>4. 공장폐수 인가</b>	타운십	○	○	( ○ )	45-60
<b>5. 위험물 &amp; 산업폐기물 인가</b>	타운십	○	○	( ○ )	30

주 : 폭풍우 인가란 갑작스런 폭풍우 등 재해가 닥쳤을 때의 처리 능력 등에 대한 인가를 의미

( )안은 주정비 지원

### 3. 캘리포니아 산 호세시의 공장설립 허가제도

-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,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는 시 정부 소관으로 산호세 시 법률(Municipal Code)에서 공장설립에 대한 규제 및 제도를 규정
  - 공장설립에 관련된 법률에는 5개의 주요 장(Title)이 있으며, 이들 법에 의거 시의 관련 규제를 적용2)
  - 계획허가에 관한 사항은 20장과 21장에 규정되어 있으며,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은 주로 24장에 규정
- 이들 계획허가와 건축허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 구역(zone)은 주거(Residential), 상업(Commercial), 산업(Industrial) 등 세 종류의 구역으로 구분

2) Municipal Code Title 17, 18, 19, 20, 24 등이 관련 규정을 담고 있음.

- 산업 구역에 속하는 공장설립의 경우, 다시 산업공원 (IP, Industrial Park), 경공업지역 (LI, Light Industrial), 중공업지역 (HI, Heavy Industrial) 등 세 가지 산업 지역 (Industrial Zoning District)으로 구별하여 규제를 적용
  - 산업공원은 R&D, 제조, 조립, 실험, 사무실 등 용도를 포함하여 사용될 수 있는 지역으로 설계를 통해 중화될 수 있는 위험물질을 다룰 수 있는 경우에 해당
  - 경공업지역은 R&D를 제외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, 산업공원과 마찬가지로 중화되지 않는 위험물질 사용은 제외되나, 산업공원보다 위험물질에 대한 수용도는 높음
  - 중공업지역은 R&D를 제외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지역으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업종이 해당
- 허가의 종류는 위의 산업 지역과 해당 업종에 따라 행정허가 (Administrative Permit), 허가 (Permit), 특별사용허가 (Special Use Permit), 조건부사용허가 (Conditional Use Permit) 등 받아야 하는 허가의 종류가 상이
  - 각 산업 지역의 용도에 맞게 사용을 허가하기 위해 본래 용도를 벗어나는 사용에 대해 허가, 특별사용허가, 조건부사용허가의 순으로 허가의 강도가 점점
  - 보통 제조업의 경우, 주 업종이 경공업에 가까운 업종은 산업공원과 경공업지역에 허가를 받으면 되나, 중공업에 가까운 업종은 중공업지역에서만 허가
- 경공업지역과 중공업지역에 공장이 설립되는 제조업의 경우, 허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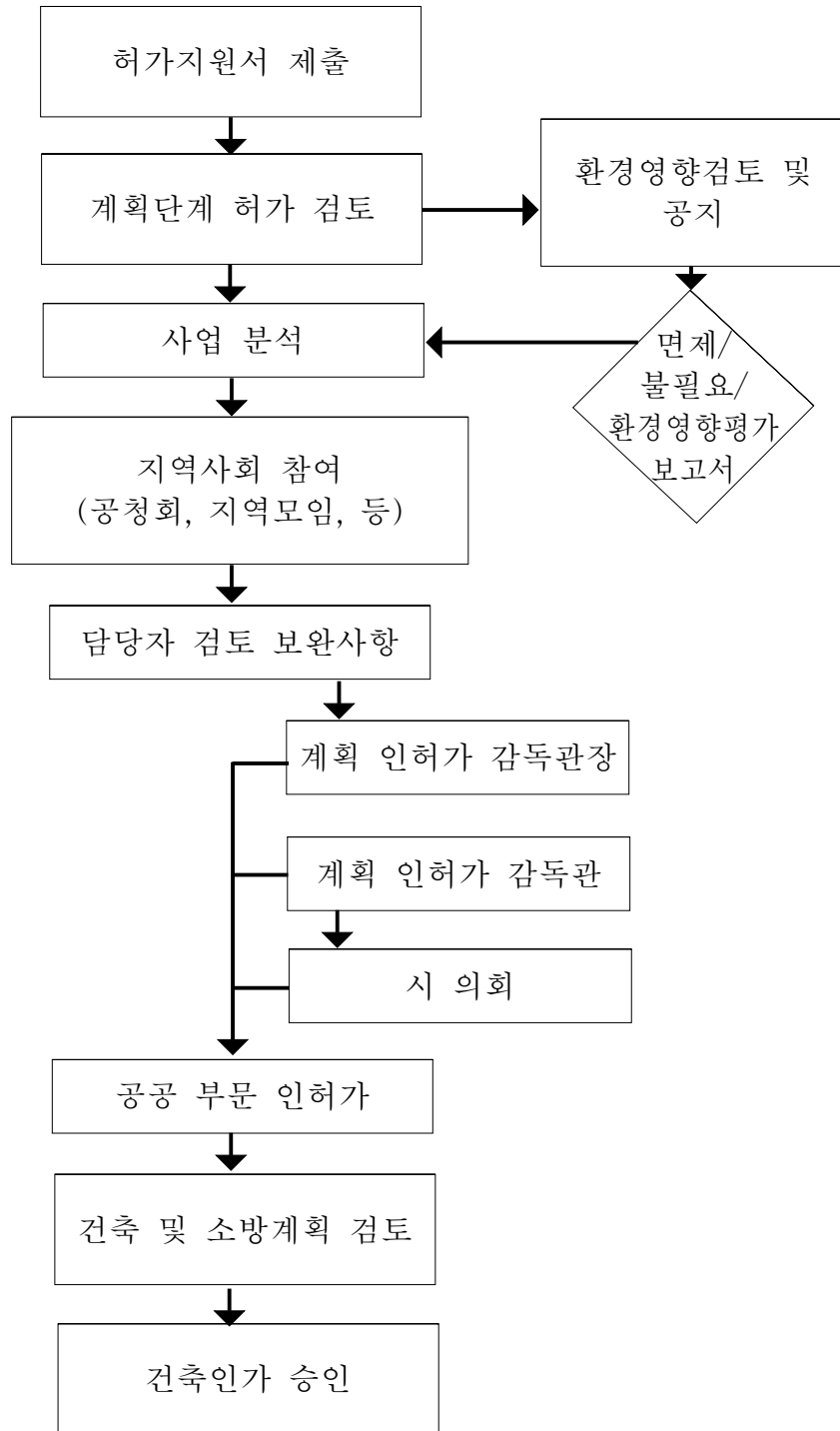
는 통상 부지개발허가 (Site Development Permit) 가 되며, 용도변경(rezoning)을 통해서만 허가가 이루어지는 계획개발허가 (Planned Development Permit) 와는 차별되기 때문

- 부지개발허가는 단순히 해당 지역에서의 용도에 맞게 공장설립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으며, 이에 해당하는 허가절차인 계획개발허가는 불필요

## □ 공장설립 허가 절차

- 모든 공장설립 계획에 대한 허가절차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지는데, 특히 설립될 공장이 주위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허가 절차와 소요기간이 비례
- 공장설립 계획에 대해 설립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현재 입지와 미래의 토지 사용계획을 제시하는 일반계획 (General Plan)을 검토
- 이후 그림에 나타난 첫 번째 단계로서 해당 허가를 특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신청료를 포함하여 해당 신청서를 제출
- 신청된 허가요청 사업에 대해 계획허가 부처에서 먼저 이를 검토하게 되며, 특히 주위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경우 통상 환경영향 검토(Environmental Impact Review)도 동시에 수행
- 환경영향검토의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보고서의 제출이 면제 (Negative Declaration) 되거나, 혹은 환경영향보고서 (Environmental Impact Report)를 제출

< 그림 II-2 > 산호세(실리콘밸리) 시 공장설립 절차도



자료 : 산호세 시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

- 이후 사업의 분석(Project Analysis)이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인 공청회(Public Hearing)를 개최
  - 사업의 성격이나 환경 및 경제적 영향 등에 따라 시의회(City Council)이나 시 허가 감독관(Planning Commissioner)이 최종적으로 공장설립 계획허가에 대해 결정
- 소방 허가(Fire Plan Check) 또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허가단계
- 공공부문의 허가(Public Works)는 일부 계획단계 허가 결정사항에 맞추어 진행되지만 독립적으로 허가받는 단계
  - 상하수도의 간선 배관으로부터 공장까지의 연결배관 및 보행자 도로나 주차장 등의 사항에서부터 지역사회에 일정부분 기여하는 차원에서의 공공도서관 건립이나 주변학교에 후원금 기부 등과 같은 사항을 취급
- 건축허가(Building Permit)는 5가지의 주요사항 검토(Review)와 건축단계의 감사(Inspection)로 구성
  - 5가지의 주요 검토사항은 구조검토 (Structural/Architectural Review), 전기검토 (Electrical Review), 기술검토 (Mechanical Review), 수도검토 (Plumbing Review), 소방검토 (Fire Review) 등이며, 공장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수도와 전기에 대한 검토가 추가

#### IV. 시사점 및 개선 방안

##### 1. 시사점

유연한 제도 운용



- 미국은 주별로 상이한 창업 및 공장설립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, 제도의 적용도 프로젝트별로 차별화
  - 캘리포니아 주 등 전통적으로 제조업 생산활동이 활발했던 주들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, 낙후지역이었던 동남부주들은 관련 제도를 간소화
- 신속한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종합 지원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, 프로젝트의 규모와 고용창출 효과를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
  - 알라바마 주정부는 H자동차공장 부지의 매각이 주법에 의해 제약을 받아 99년 임대 후 1차 연장을 통해 총 198년을 임대하기로 합의
  - 이 기간 중 주법 개정이 가능할 경우 저가에 매각하기로 합의
  - K자동차공장 건설시 대규모 부지 매각 후 재산세 부담이 크다고 인정되자 조지아 주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 16년간 저가에 임대한 후 매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세 부담을 완화

#### □ 종합지원팀의 운용을 통한 인·허가 기간 단축

- 유치 기업과 주와 시 및 카운티 정부 간에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고 공동 비전을 설정
  - 지방 정부 인·허가 부서의 담당자들과 지역 상공회의소의 전문가들이 종합지원팀을 구성하여 관련 서류작성 등 인·허가 과정에서 기업을 직접 지원

- 인·허가과정에서 종합지원팀은 이견을 공동 조정하고, 기업체의 담당자들과 회의를 개최하여 애로 사안을 해결함으로써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

\* 알라바마 주는 현대자동차 공장의 인·허가 과정에서 25개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이 지원 팀을 구성하였으며, 조지아 주는 기아 및 협력업체 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용

## □ 인·허가 대행 및 현장 중심형 행정 지원

- 프로젝트별로 팀을 구성하여 각종 인·허가를 대행해 줌으로써 해당 기업 관련자들은 공장건설에만 전념
  - 공장건설 및 가동 후에도 수시로 담당자들이 기업을 방문하여 애로사안이나 문제 발생 가능 사안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여 실시간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사전 예방

## □ 지원 인력의 전문성과 기업가 정신

- 인·허가 담당자들은 기업 실무자들과 상시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 뿐 아니라 지원 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
  - 기업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국어 구사가 가능한 인력들이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
  - 지속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 유치 기업을 선정한 후 적극적인 유치 활동 전개
- \* 조지아 주는 Red Carpet Tour 프로그램을 통해 유치 대상 기업의 CEO를 지역 기업과 공동으로 초청하여 이벤트 행사를 개최

## □ 지원 인력에 대한 성과 평가

- 조지아 주정부는 인·허가 담당자와 기업지원 인력에 대한 성과 평가를 기업 유치 건수와 고용 창출 인원 등을 기준으로 매월 실시하여 인사에 반영
  - 조지아 경제개발국은 220명의 직원이 3,000만 달러의 예산으로 기업유치 및 지원 담당
  - 창출 고용의 질(Quality of job)도 평가하고 있으며, 첨단 제조업체를 우선 유치

## □ 미래의 수익을 담보로 한 재정 지원

- 유치 기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각종 세금 면제와 현금 보조 등을 비용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미래의 세수 창출을 위한 투자로 간주
  - "No money no job"이란 모토 아래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, 지원팀이 기업과 함께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분야를 발굴
  - 공장 부지에 보전 습지가 위치한 경우 매립과 대체 습지 조성은 주정부가 대신 담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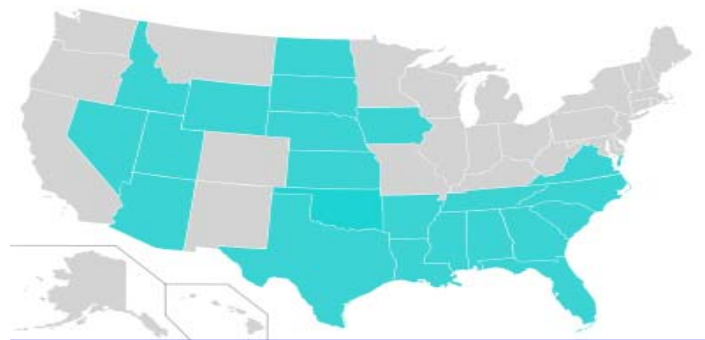
## □ 무노조 친 기업 조성

- 동남부주의 'Right to Work Law'도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
  - 알라바마 주와 조지아 주 등 미국 동남부지역의 공장건설이 증가

하고 있는 이유는 노조활동이 미약하기 때문

- 미국 민간부문의 노조가입률은 1983년의 16.5%에서 2006년에는 7.4%로 하락
- 동 기간 중 알라바마 주는 15.3%에서 4.6%로, 조지아 주는 11.1%에서 3.4%로 하락하여 노조 가입률 순위는 각각 34, 42위를 기록
- 이들 주는 'Right to Work Law'를 운영하고 있으며, 지역 근로자와 주민들은 노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유
  - 기업에 취업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노조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Union shop과 노조에 가입할 의무는 부여하지 않지만 노조회비는 부담하는 Agency shop을 금지
  - 양 주의 전통산업이었던 섬유산업이 노조활동에 의해 사양화되고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

< 그림IV-1 > 'Right to Work Law' 도입 주 현황



#### □ 기업의 요구 적극 수용

- 기업의 소소한 요구사안도 적극 수용
  - 기업이 요구할 경우 지면 변경과 공장 주변 도로명의 개명도 추진

- \* 현대차가 공장 부지 주변의 글로벌 일관성 유지 명분으로 주정부와 소방 당국의 합의하에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여한 지번 변경을 요구하자 수용
- \* 현대와 기아자동차 주변 도로를 개설 및 확장하면서 도로 명을 현대/기아Boulevard와 현대Road 및 기아Parkway 등으로 변경하여 투자 기업의 이미지를 함양
- \* 기아자동차가 인접 고속도로로부터의 시각적인 선전효과를 위해 공장과 고속도로간의 구릉지를 평탄화하고 수목의 제거를 요청하자 수용

□ 외국기업 유치에 통한 지역 산업구조의 전환 및 고도화

- 섬유산업의 구조조정과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한 조지아 주는 제조업 출하액에서 11위를 차지
  - 전통적인 농업 중심주에서 탈피하여 국내외 기업을 적극 유치한 알라바마 주는 제조업 생산직 고용면에서 15위를 차지

< 표IV-1 > 3개 주의 미국 제조업 내 위상(2005년)

	전체 고용	생산직 고용	부가가치	출하액
알라바마	18위	15위	22위	20위
조지아	10위	10위	11위	11위
캘리포니아	1위	1위	1위	2위

자료 : 미 상무부,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2008

- 알라바마 주는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주의 1인당 소득을 2000년 미국 내 44위에서 2006년에는 40위로 끌어 올린 반면
  - 조지아 주는 26위에서 38위로 하락하자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 중

- 그러나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는 8위에서 11위로 하락
- 현대자동차가 투자한 알라바마 주 몽고메리 시는 2008년 인구 10만~50만 미국 도시 중 낮은 사업비용 순위에서 2위를 차지
- KPMG가 토지, 건축, 운송, 노동비용 및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등을 평가한 결과 몽고메리 시는 미국 평균 보다 비용이 5.3% 저렴

## 2. 국내 제도 개선 방안

### □ 전근대적 · 비효과적 · 중복적 규제의 점진적 철폐

- 우리나라의 각종 규제 조항이 변화하고 있는 창업환경이나 공장환경에 부응하지 못하고 비효과적
- 인·허가 및 협의 부서의 중복성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
  - 국내 인·허가 관련 부서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, 부처 간 협의에 문제를 노정
- 전문성을 이유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, 공장 외관의 미화 등 불필요한 요구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
- 복잡한 서류 작성 요구로 인해 기업 담당자의 실수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수정 지원을 실시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수정을 요구함으로써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

## □ 공장설립 규제 완화 관련법의 통합 조정

- 공장설립 규제가 고용창출을 억제하고 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관련 규제완화법의 통합 조정이 필요
  -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규제 담당 인력의 업무 처리 효율성 제고와 대기업 서비스 마인드 고양을 위한 교육훈련이 효과적
  - 각 부처별 교육훈련 등을 통한 규제 완화의 성과를 평가하고 보고서를 발행
    - \* 미국은 1980년에 “규제유연성법(Regulatory Flexibility Act)을 제정하여 중소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
    - \* 1996년에는 “소기업규제시행공정법(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)을 제정하여 부처별 규제를 법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조치
    - \* 부시행정부는 2002년부터 5년간 각종 규제 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
- 경쟁력강화위원회가 주무 부서 역할을 담당하면서 각종 규제의 철폐 및 완화 뿐 아니라, 규제 관련 부서 담당자들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인식을 전환시킬 필요

## □ 개발과 보전의 조화

- 공장설립 계획에 대한 허가와 관련하여 하나의 일관된 체계를 갖는 행정제도로의 개편이 필요
  -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호세 시의 경우처럼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 계획에 대한 허가시스템은 세 개의 각 지역에 대해 업종별로 체계화된 행정 허가시스템을 적용

-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산업공단(Enterprise Zone)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입지의 경우,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별도로 선정 가능
- 이를 위해,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해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 차별화 필요

#### □ 환경영향 평가 시스템의 실효성 제고

- 공장설립 계획에 대한 허가와 관련하여 하나의 일관된 체계를 갖는 행정제도로의 개편이 필요
  - 미국 캘리포니아 주 San Jose 시의 경우처럼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 계획에 대한 허가시스템은 세 개의 각 zone에 대해 업종별로 체계화된 행정 허가시스템을 적용
  -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Enterprise Zone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입지의 경우, 또 다른 지역적 특성, 예를 들면,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를 고려하여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별도로 선정할 수도 있음

#### □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차별적인 규제의 적용

- 미국 산호세 시의 경우처럼 환경영향의 정도에 따라 차별적인 규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인 절차를 거치는 허가시스템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
  - 환경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종들을 미리 분류하여 덩으로써 이들 업종에 속하는 경우, 자동적으로 환경영향보고서 제출 및 관련 공청회 개최를 면제



- 이러한 업종에 속하지 않는 경우, 환경영향이 미미한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환경영향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산호세 시의 시스템을 고려해 볼 필요

#### □ 공장설립 정보의 원활한 제공

-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 호세시의 경우, 각 부서별 대민창구를 통하여 허가비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
- 특히 공장설립에 대한 행정비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전산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활용하여 비용 산출정보를 제공

#### □ 공장설립 인·허가 절차의 간소화 및 비용 인하

- 국내 공장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·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비용을 인하할 필요
  - 미국의 공장용지가 대부분 평야지대나 구릉지를 개간하여 조성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임야와 농지의 개간과 공유수면 매립 등을 통해 조성되고 있는 점에서 관련 서류 및 절차의 대등한 비교는 어려움
  -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동반하는 공장건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의 인·허가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할 필요
  - 또한 생산 제품과 고용 현황에 따라 규제 관련 법·제도의 적용을 달리할 필요

#### □ 표준 매뉴얼의 개발과 적용

- 감사를 이유로 담당자가 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, 무리한 적용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
  -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인 '세움터'를 운영하고 있으나, 기존 서류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자원과 시간 낭비를 초래
    - \* 온 라인으로 첨부하여 제출한 관련 서류를 인허가 담당 부서가 복사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, 민원인에게 신속한 업무처리가 필요할 경우 복사본을 직접 담당 부서에 제출하도록 요구
- 공통 서식 등 표준 매뉴얼의 개발을 통해 행정처리의 효율화 도모

#### □ 배타적 관행의 철폐

- 외부 인·허가 대행업체가 공장건설 신청 시 지역업체 보호·육성이라는 명분하에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하여 기간이 지연
- 인·허가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배타적 관행을 철폐
  - 필요한 경우 알라바마 주와 조지아 주의 Best Practice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

#### □ 지역 퇴직 경영자와 기업 지원 조직의 활용

- 지역 기업 퇴직 경영자를 상공회의소 등에 배치하여 기업 유치 및 지원 실무진으로 활용
  - 미국 대부분의 상공회의소는 지역 퇴직 경영자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명하여 활용

## □ 창업지원센터와 지역혁신센터의 구조개편

-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설립한 창업보육센터와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해 구축한 지역혁신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개편하여 창업과 국내외 기업의 공장설립을 활성화
  - 단순한 창업기업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을 입주 창업기업의 연구개발과 엔지니어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과 연계하여 개편
  - 소수의 운영 인원으로 지역기업에게 장비 제공, 산학 파트너십 체결 지원 및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혁신센터의 기능을 지역 중소기업의 공동연구개발센터로 전환하여 기업유치 기반으로 활용
  - 중소기업 지원 석박사 인력을 공동 배치하여 활용함으로써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원 역량을 강화

## □ 추가 검토 사안

- 공장설립 허가 행정시스템의 일원화와 환경영향 관련 단계별 차별규제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 ☞